

영등포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7.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244호로 2020년 7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제명을 반영하고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안 제1, 2조)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 2, 5, 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0. 6. 4. ~ 6. 24./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추어 인용 법령명과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규정에 맞추어 법령명과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특화특구지정의 효과)**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가 지정된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는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화특구계획 및 제18조에 따른 조례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조례의 제정)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도시·

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에 관하여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